



# 행정자치부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

- 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 -

##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

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다보니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

기 어려웠다.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.

### ☞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자치부령 제81호, 2016.9.13., 일부개정]

#### 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 ① (생략)

가. 공사·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(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.7배)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<단서 신설>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자치부령 제86호, 2016.11.29., 일부개정]

#### 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가. \_\_\_\_\_ 3분의 1 이내, 다만, 계약목적물의 특성, 안전성, 난이도, 계약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## 지연배상금률 경감으로 업계 부담완화

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.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/2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(평균 10% 수준)과 계약의 이행

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(8% 정도)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.

### ☞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/2 수준으로 경감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자치부령 제81호, 2016.9.13., 일부개정]

제75조(지연배상금률)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사 : 1000분의 1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자치부령 제86호, 2016.11.29., 일부개정]

제75조(지연배상금률) \_\_\_\_\_

1. 공사 : 1000분의 0.5

###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업체 기준 명확화

기준에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'주된 영업소의 소재지'로만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

적으로 발생했다. 따라서 '주된 영업소 소재지'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명확화 했다.

#### ☞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명확화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자치부령 제81호, 2016.9.13., 일부개정]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자치부령 제86호, 2016.11.29., 일부개정]
<p><b>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 ① (생략)</b>                     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,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. (후략)</p>	<p><b>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         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 _____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_____.</p>

###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

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

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토록 했다.

#### ☞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이 지연배상금 납부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621호, 2016.11.29., 타법개정]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622호, 2016.11.29., 일부개정]
<p><b>제90조(지연배상금) ①·② (생략)</b>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90조(지연배상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      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.</p>